J.P.Morgan
Asset Management

JP모간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5.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설> 12.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td><td>2007.10.1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이하 생략>
<신설></td><td>2007.10.1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이하 생략>
2017.[date].: 펀드 종류 변경(재간접형)에 따른 투자제한, 투자전략 및 투자신탁 명칭 변경</td></tr>
<tr><td>제 2 부. 4. 나. 업무위탁사항</td><td>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주식등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주)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내용 중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2.운용관련 업무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d>해당사항 없습니다.</td></tr>
<tr><td>제 2 부. 5. 나.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td><td><table><tr><th>성명</th><th>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h></tr><tr><td>Pauline Ng</td><td>-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 AllianzDresdner Asset Management
- 2005 년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입사</td></tr></table>주)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td><td><삭제></td></tr>
<tr><td>제 2 부. 5. 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 년간 변경내용</td><td><table><tr><th>변경일</th><th colspan="2">변경사항</th></tr><tr><td rowspan="3">2009.04.01</td><td colspan="2">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변경</td></tr><tr><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tr><td>Joshua Tay</td><td>Pauline Ng</td></tr></table></td><td>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td></tr>
<tr><td>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제 2 부. 8. 가. 투자대상</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한도</th><th>투자대상 세부설명</th></tr></table></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한도</th><th>투자대상 세부설명</th></tr></table></td></tr>
</table>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국내주식	1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발행된 것("국내주식")	①주식형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주식형 집합투자증권")
	②해외주식	60% 이상	아세안 및 아세안 주변국가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아세안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주식")	②기타 집합투자증권	50%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제외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기타 집합투자증권")
	③파생결합증권	4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④국내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국내채권")	③국내주식	50%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발행된 것 ("국내주식")
	⑤해외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④해외주식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주식")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⑥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⑤파생결합증권	5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⑦어음 등	40% 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⑥국내채권	5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국내채권")
	⑧해외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⑦해외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⑨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내파생상품")	⑧자산유동화증권	5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⑩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장외파생상품")			
	⑪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의 총액이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⑨어음 등	50%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⑫수익증	5% 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	⑩해외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권		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5%이하(자산총액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0%이하(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⑬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4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	⑪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내파생상품")
	⑭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4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	⑫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장외파생상품")
	⑮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상기 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⑧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⑬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⑯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⑭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⑰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자산총액의 4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⑮증권의 차입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상기 ①부터 ⑦까지 및 ⑨부터 ⑩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⑱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⑯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⑫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⑰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⑱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모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⑫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재간접형으로 변경등록이 완료된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td><td>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⑮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td><td>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의 투자한도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으로 변경적용되며, ④의 투자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⑮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td></tr>
<tr><td>제 2 부. 8. 나. 투자제한</td><td>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제한의 내용</th></tr>
<tr><td>①단기대출</td><td>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td></tr>
<tr><td>②동일종목투자</td><td>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td><td>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인 JP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제한의 내용</th></tr>
<tr><td>①집합투자증권</td><td>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td></tr>
<tr><td>②집합투자증권</td><td>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각 투자할 수 있</td></tr>
</table></td></tr>
</table>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ㅇ자산총액의 100%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음.
			③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집합투자증권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단기대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⑧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1월간 적용		ㅇ자산총액의 100% 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 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③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⑩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월간 적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② 및 ⑥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⑨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부터 ④까지 및 ⑥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⑩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⑪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⑫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⑬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⑭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⑮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⑯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td><td></td><td>
<table>
<tr><td></td><td>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td></tr>
<tr><td colspan="2">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②, ⑧, ⑫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 colspan="2">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⑥까지, ⑧부터 ⑩까지, ⑫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9.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td><td>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게 위탁됩니다.</td><td>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는 주로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d>펀드명</td><td>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td></tr>
<tr><td>기준통화</td><td>미달러화(USD)</td></tr>
<tr><td>벤치마크</td><td>MSCI AC ASEAN Index (TRN)</td></tr>
<tr><td>투자목적</td><td>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주)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투자전략</td><td>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td></tr>
</table>
</td></tr>
</table>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제외)의 67% 이상을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소규모 자본 회사 포함)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부수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이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공격적으로 운용되고,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지분증권의 가치는 각 회사의 실적과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 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환율 변동은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벤치마크는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벤치마크와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펀드등록일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따라 2013년 1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펀드매니저	Pauline Ng Pauline Ng는 Pacific Regional Group 소속으로 투자매니저이자 아세안 국가 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2005년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AllianzDresdner Asset Management 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Asia ex Japan telecommunications의 애널리스트로서 그 후에는 말레이시아와 이머징 아시아의 책임운용역으로 일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회계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CFA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회사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 2 부. 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주 1)]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하고자 합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의 통화를 참조통화로 헷지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 및/또는 외화자산의 통화 노출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헷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헷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이하 생략> 비교지수: MSCI AC South East Asia TRN Index(USD)[주 4)] 95% + 콜금리 5% 주1) 참조통화란 모투자신탁이 채택한 통화를 말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외화자산의 가치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 참조통화는 미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하 생략>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하고자 합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헷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헷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이하 생략> 비교지수: MSCI AC ASEAN TRN Index(USD)[주 3)] 95% + 콜금리 5% <삭제> <이하 생략>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주 4)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3)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평가액 산출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9.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투자신탁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되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가>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하여 제2부 “9.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중 위험특성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헷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하고자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을 참조통화로 환헷지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에 대한 참조통화의 가치상승 및/또는 (ii) 참조통화에 대한 외화자산의 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헷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하고자 합니다.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 대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산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외화자산의 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위험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i)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위험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 집합투자 기구 위험	<신설>	하위 집합투자 기구 위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고, 단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하위 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이하 같음)은 해당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14. 나.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신설>	하위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CITS 및 UCI에 대한 투자위험	<신설>	UCITS 및 UCI에 대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UCITS 및 UCI (이하 "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본 위험은 피투자펀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결정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투자펀드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과 동일한 증권, 동일한 자산 클래스, 산업, 통화, 국가 또는 상품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제나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투자펀드의 경우 일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td><td>
<table>
<tr><td></td><td></td></tr>
<tr><td>유동성 위험</td><td>모투자신탁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자산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일부 자산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td></tr>
<tr><td>오퍼레이션 위험</td><td>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td></tr>
</table>
</td><td>
<table>
<tr><td></td><td>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기타 JPMorgan Chase & Co. 소속 회사가 운용하는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선취보수, 전환/환매 수수료, 연간 운용/자문보수 또는 운영/관리 비용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td></tr>
<tr><td>유동성 위험</td><td>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거래상품을 다량 보유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월 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단기간에 즉시 현금화하기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td></tr>
<tr><td>오퍼레이션 위험</td><td>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혹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신탁업자 보수 - 0.06%

<이하 생략>

주 7) 운용보수는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Singapore) Limited 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지급되는 운용위탁보수는 연간 0.50%)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td><td>신탁업자 보수 - 0.04%

<이하 생략>

주7) 집합투자업자보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Singapore) Limited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는 연간 0.50%)를 포함하고</td></tr>
</table>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업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 9)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로서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한 보수와 발생되는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9) 합성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로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는 이 투자신탁에 청구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0)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이 최근 1 년 동안 지급한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0)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됩니다..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14. 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 <이하생략> <신설>	(1)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신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REITs를 포함함)를 처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금 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하생략>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td><td><신설></td><td>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구 분</td><td>주요 내용</td></tr>
<tr><td>투자기한</td><td>2017년 12월 31일까지</td></tr>
<tr><td>투자한도</td><td>1인당 3천만 원(투자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가입한 모든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을 합산함)</td></tr>
<tr><td>대상펀드</td><td>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td></tr>
<tr><td>세제혜택</td><td>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을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td></tr>
<tr><td>세제혜택 적용기간</td><td>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까지</td></tr>
</table>

(8) 금융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 사안에 관한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한 관할지들은 해당 관할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AEOI/CRS에 따른 정보 보고 및 교환의 범위와 적용은 각 관할지 현지의 AEOI/CRS 시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호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영국을 포함한 77개 국가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홍콩은 적절한 국가들과 양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AEOI/CRS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조세 전문가로부터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제 4 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td><td>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주식등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td><td>해당사항 없습니다</td></tr>
</table>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td><td>Limited'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변경절차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회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d>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td><td>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td></tr><tr><td>설립일</td><td>1976 년 8 월 4 일</td></tr><tr><td>회사주소</td><td>17th Floor, Capital Tower, 168 Robinson Road, Singapore 068912
전화번호: (65) 6882 2411
팩스: (65) 6536 3361</td></tr><tr><td colspan="2">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는 1976 년 싱가포르 회사법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재정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9 년 12 월 31 일 현재 110 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td></tr></table></td><td></td></tr>
<tr><td>제 4 부. 4.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td><td>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매매업무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td><td>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td></tr>
<tr><td>[붙임] 용어풀이</td><td>15.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를 의미합니다.</td><td>15. "하위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를 의미합니다.</td></tr>
</table>

- **신탁계약**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2 조(용어의 정의)	5. "투자신탁"이라 함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을 말한다.	5. "투자신탁"이라 함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말한다.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이다.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이다.
제 3 조의 2(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수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9 조(보수)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모든 종류 수익증권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0.60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모든 종류 수익증권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0.40
부칙(2017.01.)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제 5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등록의 완료 및/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간이투자설명서**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며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외화자산의 운용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제이피모간 펀드-아세안펀드(JPMF-ASEAN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보수(연, %)	모든 클래스의 기타보수: 0.085%	모든 클래스의 기타보수: 0.065%
II.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게 위탁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세안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MSCI AC ASEAN Index (TRN) 투자목적: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주)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는 내용은 아닙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부수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공격적으로 운용되고,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DRAFT

<table>
<tr><th>조항</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td><td></td><td><table><tr><td></td><td>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환율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통화 헷징은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td></tr></table></td></tr>
<tr><td>II. 3. 수익구조</td><td>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손익은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td><td>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손익은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td></tr>
<tr><td>II. 6. 주요투자위험</td><td><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시장위험 및 투자신탁 위험</td><td>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tr><td>헷지위험</td><td>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하고자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을 참조통화로 환헷지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시장위험 및 투자신탁 위험</td><td>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tr><td>헷지위험</td><td>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하고자 합니다.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 대비 하위</td></tr></table></td></tr>
</table>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에 대한 참조통화의 가치상승 및/또는 (ii) 참조통화에 대한 외화자산의 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산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외화자산의 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8.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미달러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하고자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의 통화를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주1)] 하고자 합니다.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참조통화로 헷지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 가치 및/또는 외화자산의 통화 노출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헷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헷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환헷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왑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기법(잘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화폐를 헷징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가 외화자산의 통화 및/또는 참조통화에 대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각각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환헷징을 하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환헷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헷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헷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환헷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왑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기법(잘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화폐를 헷징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각각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환헷징을 하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환헷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III. 1. 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신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

DRAF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

DRAFT